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 - 465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지정하였거나 임시 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및 오남용 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이력, 상병내역 등 정보를 요청하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의2)
- 나. 법률에서 위임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안 제20조의8 신설)
- 다.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추가 지정(마약(1종), 향정신성의약품(14종) 및 원료물질(18종))함(안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8)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치료 기록에 관한 자료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11.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자료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자료
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자료

제20조의8을 제20조의9로 하고, 제2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1조의7에 따른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임시마약류 또는 마약류, 임시마약류가 아닌 물질(대사체, 제품 등을 포함한다)로서 오용 또는 남용으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등의 위해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등의 모니터링 및 현황에 관한 사항
  2. 하수 채취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마약류 등의 사용량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따른 분석 정보의 축적 및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는 방법보다 더욱 과학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인체시료 채집 등을 말한다)으로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에 제109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9	부토니타젠 (Butonitazene)	2-[2-[(4-butoxyphenyl)methyl]-5-nitrobenzimidazol-1-yl]-N,N-diethylethanimine
-----	-------------------------	---

별표 3에 제137번란부터 제148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Isopropylphenidate)	propan-2-yl 2-phenyl-2-piperidin-2-yl acetate
138	파라-메톡시에틸암페타민 (p-Methoxyethylamphetamine)	N-ethyl-1-(4-methoxyphenyl)propan-2

		-amine
139	티에노암페타민 (Thienoamphetamine)	1-thiophen-2-ylpropan-2-amine
140	엔-히드록시 엠디엠에이 (N-hydroxy MDMA)	N-[1-(1,3-benzodioxol-5-yl)propan-2-yl]-N-methylhydroxylamine
141	비디비 (BDB)	1-(1,3-benzodioxol-5-yl)butan-2-amine
142	디오아이 (DOI)	1-(4-iodo-2,5-dimethoxyphenyl)propan-2-amine
143	2,5-디메톡시페네틸아민 (2,5-Dimethoxyphenethylamine)	2-(2,5-dimethoxyphenyl)ethanamine
144	25아이피-엔비오엠이 (25iP-NBOMe)	2-(2,5-Dimethoxy-4-propan-2-yl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145	30시-엔비오엠이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146	3에프-페네티라진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147	4-메틸메틸페니데이트 (4-Methylmethylphenidate)	methyl (2R)-2-(4-methylphenyl)-2-[(2S)-piperidin-2-yl]acetate

별표 6에 제80번부터 제82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0	브로마졸람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81	노르플루디아제팜 (Nor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one
82	메클로나제팜 (Meclonazepam)	5-(2-chlorophenyl)-1,3-dihydro-3-methyl-7-nitro-2H-1,4-benzodiazepin-2-one

별표 8 제1호 가목에 제31번란부터 제48번란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1	4-피페리돈 (4-piperidone)		100%
32	1-삼차-부틸옥시카르보닐-4-피페리돈 (1-tert-Butyloxycarbonyl-4-piperidone, 1-Boc-4-piperidone)		100%
33	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P-2-P methyl glycidic acid)		100%
34	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메틸 에스테르 (P-2-P methyl glycidic acid, methyl ester)		100%
35	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에틸 에스테르 (P-2-P methyl glycidic acid, ethyl ester)		100%
36	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프로필 에스테르 (P-2-P methyl glycidic acid, propyl ester)		100%
37	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이소프로필 에스테르 (P-2-P methyl glycidic acid, isopropyl ester)		100%
38	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부틸 에스테르 (P-2-P methyl glycidic acid, butyl ester)		100%
39	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이소부틸 에스테르 (P-2-P methyl glycidic acid, isobutyl ester)		100%
40	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이차-부틸 에스테르 (P-2-P methyl glycidic acid, sec-butyl ester)		100%
41	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삼차-부틸 에스테르 (P-2-P methyl glycidic acid, tert-butyl ester)		100%

42	3,4-엠디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에틸 에스테르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ethyl ester)		100%
43	3,4-엠디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프로필 에스테르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propyl ester)		100%
44	3,4-엠디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이소프로필 에스테르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isopropyl ester)		100%
45	3,4-엠디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부틸 에스테르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butyl ester)		100%
46	3,4-엠디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이소부틸 에스테르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isobutyl ester)		100%
47	3,4-엠디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이차부틸 에스테르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sec-butyl ester)		100%
48	3,4-엠디피-2-피 메틸 글리시드산, 삼차부틸 에스테르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tert-butyl ester)		100%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8, 제20조의9의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p>1. ~ 8.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치료 기록에 관한 자료</p> <p>10.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요양기관에 관한 자료</p> <p>11.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자료</p> <p>1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자료</p> <p>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p>

<신 설>

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자료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1조의7에 따른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임시마약류 또는 마약류, 임시마약류가 아닌 물질(대사체, 제품 등을 포함한다)로서 오용 또는 남용으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등의 모니터링 및 현황에 관한 사항
2. 하수 채취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마약류 등의 사용량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따른 분석 정보의 축적 및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제20조의8 (생략)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는 방법보다 더욱 과학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인체 시료 채집 등을 말한다)으로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의9 (현행 제20조의8과 같음)